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ISD), 공정한 글로벌 스탠다드

2011. 11.

외 교 통 상 부
(통상교섭본부)

목 차

I. ISD 제도란 ?	1
--------------	---

II. 한·미 FTA의 ISD 제도는 어떤 모습인가 ?

1. 한·미 FTA의 ISD 개요	3
2. 실체적 요건	4
3. 중재 절차	8

(별첨) ISD 비교 (NAFTA, 미 2004모델 BIT, 한미FTA)

III. ISD에 대한 오해, 진실은 ?

1. ISD는 우리에게 필요한가?	13
2. 국가의 공공정책 자율권이 훼손된다?	15
3. 중재 판정부는 중립적인가?	17
4. 사법주권이 훼손된다?	19
5. 투자자 제소시 중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나?	20
6. 환경정책도 ISD 대상이 될 수 있는지?	21
7. 간접수용으로 ISD 제소하면 막을 방법 있나?	22
8. BIT보다 FTA에서 ISD의 제소가 더 많다?	24
9. 호주-미국 FTA에 ISD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26
10. 미국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던데?	28

목 차

IV. 우리의 공공정책 자율권은 보장되어 있나 ?

1. 협정의 적용배제	30
2. 예외	31
3. 개별 분야 정책권한 확보	32
4. 현재유보 · 미래유보	33
(별첨 1) 한국의 투자서비스 현재유보 47개	34
(별첨 2) 한국의 투자서비스 미래유보 44개	36
(별첨 3) 한국의 금융분야 현재·미래유보 18개	38
(참고 1) 열린우리당 ISD 협상결과 평가보고서(07.7월) 평가 내용 발췌	39
(참고 2) ISD 관련 보도자료	41
① 11.10.31자 법무부 보도자료	
② 11.11. 1자 FTA민간대책위원회 보도자료	
③ 11.11. 1자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④ 11.11. 2자 외교통상부 보도자료(2건)	
(참고 3) 우리의 BIT 체결현황	62
(참고 4) 기체결 FTA의 ISD 포함사항	64
(참고 5) 한·미간 투자통계	65

I ISD 제도란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 :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한 조치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공정한 국제중재를 통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최소한의 투자 보호장치

- 투자자-국가분쟁 해결제도(ISD)는 반세기동안 여러 국가들이 인정해 온 “글로벌 스탠다드” 임.
 - 전세계 2,676개 투자협정(BIT)에 대부분 포함

- 우리는 1970년대부터 양자간 투자협정(BIT)에 도입해 왔음.
 - 우리가 체결하여 발효 중인 모든 FTA(7개중 한·EU FTA를 제외한 6개)와 85개 BIT 중 81개에 포함(ISD 절차인 ICSID에 우리나라는 1967년 가입)
 - ※ EU 회원국들과는 개별 투자협정에서 ISD를 반영

- ISD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함.
 -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국내 외국인 투자보다 크므로, ISD 제도를 통한 우리의 해외투자 보호가 긴급요
 - ※ 우리의 대세계·대미 해외투자·투자유치 규모 (2011.6월까지 누적금액)
 - 對세계 : (한국→세계) 2,675.8억불, (세계→한국) 1,789.5억불
 - 對미국 : (한국→미국) 533.8억불, (미국→한국) 448.9억불 (☞ 참고 5)
 - 우리 해외투자가 집중된 중국과의 투자보장협정을 2007년 개정하여 ISD 조항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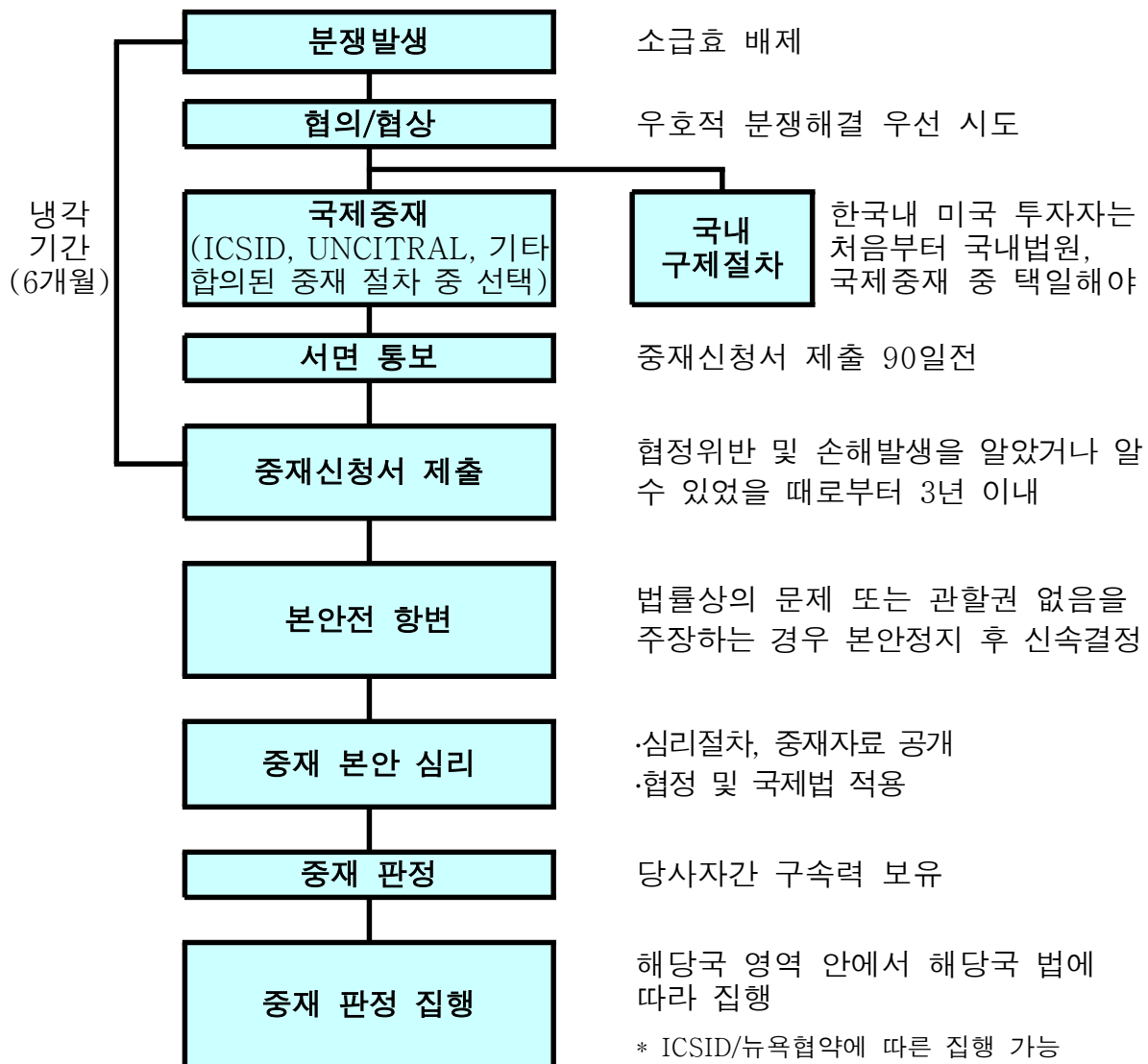
- 미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규모가 계속 확대 추세에 있는데, 미국내 경쟁국 투자는 ISD로 보호받는데 우리 투자는 ISD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곤란
- 투자유치국의 국내소송이 아닌 제3자에 의한 공정한 사법 구제수단을 확보함으로써 투자 안정을 제고
 - 소송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소송에 따른 매물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분쟁해결제도

한·미 FTA의 ISD 제도는 어떤 모습인가 ?

1 한·미 FTA의 ISD 개요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임.

< ISD 절차 개요도 >



2 실체적 요건

☞ 한·미 FTA는 1994년 NAFTA나 2004년 미국 모델 투자협정상의 제반 실체적·절차적 요소를 대폭 개선하여 공정성, 투명성을 향상(☞ 참고 자료)

1. 물적 대상: 투자(investment)

- ☐ 투자가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투자의 특징을 지닌 자산 (예시적·개방적) (제11.28조)

2. 인적 대상: 투자자(investor)

- ☐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attempts to make, is making, or has made an investment) 당사국 또는 그 공기업, 또는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제11.28조)

3. 피소당사자(respondent)

- ☐ 피소당사자는 “국가”임(우리나라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송무업무 담당).
 - ISD 청구대상이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조치라 하더라도 투자자는 국가(중앙정부)를 상대로 ISD 청구를 제기

4. 중재 청구 요건(제11.16조제1항)

- ① 투자유치국이 협정상 의무 또는 투자계약, 투자인가를 위반하였을 것
- ② 그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할 것

① 협정상(제11장 (투자) 제1절) 의무 위반

가. 내국민대우(제11.3조)

- ☐ 외국인 투자자를 투자유치국 국민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을 의무

나. 최혜국대우(제11.4조)

- ☐ 외국인 투자자를 제3국 투자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을 의무

다. 대우의 최소기준(제11.5조)

-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예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을 부여
 -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 : 주요 법률체계에 구현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사법거부 등을 하지 않을 의무 등
 - 충분한 보호 및 안전(full protection and security) : 국제관습법상 경찰보호 제공

라. 수용 및 보상(제11.6조)

- 수용의 요건 : ① 공공목적을 위하여, ② 비차별적 방식으로, ③ 신속·적절·효과적인 보상, ④ 적법절차와 최소대우기준에 따라서만 투자를 직·간접적으로 수용 또는 국유화 가능
 - 직접수용: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를 통하여 투자가 국유화 또는 수용되는 경우
 - 간접수용: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에 동등한(equivalent) 효과를 가지는 경우

□ 간접수용 (부속서11-나)

- ☞ 한·미 FTA는 간접수용의 인정범위가 더욱 제한되도록, 간접수용 판단 법리를 추가적으로 명확히 하고, 정당한 공공복지정책 목적의 예시에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을 포함
 - 간접수용의 판단법리: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통해 결정
 - ①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 ② 정부행위가 투자에 대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
 - ③ 목적과 맥락을 포함한 정부행위의 성격
 - 우리 대법원의 수용 법리상 원칙인 '특별희생(special sacrifice)' 법리를 추가

- 간접수용의 원칙적 예외: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와 같은(예시적 목록)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한 당사국의 비차별적 규제 행위는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음.
- 세금 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특히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정책. 원칙 및 관행에 합치하는 과세조치, 비차별적 과세 조치는 원칙적으로 수용에 해당되지 않음(부속서11-바)

마. 송금(제11.7조)

- 적용대상투자자에 관한 모든 송금이 자유롭고 지체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
- 한·미 FTA는 국제수지 악화 및 외환위기 등 심각한 대내외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우리 정부가 외국환거래를 통제하는 단기세이프가드 조치를 인정(미국은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없음.)(송금부속서)

바. 이행요건(제11.8조)

-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산원료 이용 등 불합리한 의무 부과 금지

사.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 외국투자기업의 고위경영진에 대한 국적 요건 등을 부과 금지

② 투자계약

- 외국인투자자가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국영기업체 제외)와 ① 자원채굴, ② 발전, 상수도 등 공공서비스 공급, ③ 인프라건설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서면계약이나 그 예가 거의 없음.(예 : 인천 제2연육교 건설(영국투자회사))

③ 투자인가

- 양측은 협정 서명일 현재 투자인가기관을 갖고 있지 않음을 확인(각주17)
 - ※ 투자계약과 투자인가가 ISD 제소대상에 포함되어 ISD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투자계약은 그 예가 거의 없으며, 투자 인가는 각주 규정을 통해 사실상 무력화

- 우리가 체결한 다수 BIT도 한·미 FTA의 투자계약, 투자인가보다 더 포괄적인 국가계약의무 준수조항을 포함
- * 포괄적 국가계약의무 준수조항(우산 조항): 협정상 의무 위반 외에 여타 모든 투자자-국가간 분쟁을 협정상 ISD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4. ISD 기각 사유

□ 우리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은 ISD 기각 사유에 해당(상세 별첨 IV 참조)

- ① **협정의 적용배제:** 공공퇴직제도·법정사회보장제도, 보조금 등
- ② **예외:** 간접수용 예외(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한 당사국의 비차별적 규제), 필수적 안보, 비차별적 과세조치 등
- ③ **개별 분야 정책권한 확보:** 정부조달, 금융, 공공서비스, 공기업 민영화, 외국인투자 제한 등
- ④ **현재유보·미래유보:** 필요시 피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공동위원회에서 해석(중재판정부는 동 해석에 따라야 함)

3 중재 절차

1. 중재 청구 제기(제11.16조)

□ 소급효 배제(제11.1조제2항)

- 발효 전에 발생한 조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ISD 원용 불가

□ 외국 투자자는 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는 ② 자신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피청구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국제중재 제기 가능(제1항)

- 외국인이 투자한 국내기업이 직접 ISD 중재청구를 할 수는 없음.

□ 이용 가능한 중재기관·절차(제11.16조 제3항)

- 피청구국과 외국 투자자 모두 ICSID협약 당사국인 경우: ICSID협약과 ICSID 중재절차규칙
- 양국 중 일방이 ICSID협약 비회원국인 경우: ICSID 추가절차규칙
- UNCITRAL 중재규칙
- 기타 분쟁당사자가 합의하는 중재기관 또는 중재규칙에 따라 청구 제기 가능(예: 국제상업회의소(ICC) 등)

* ICSID(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World Bank 산하 기구로 ICSID 협약은 147개국인 당사국(우리나라와 미국 포함)

*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국제법 해석에 관한 UN 산하 전문위원회로서 국제중재절차 및 규칙을 규정

2. 중재에 대한 당사국의 동의(제11.17조)

- 한·미 FTA 협정에 따른 ISD 회부에 대해 사전 동의

3. 국제중재와 국내제소 절차와의 관계

- 투자자는 상대국 법원 또는 국제중재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나, 미국내 우리 투자자가 ISD 중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개시하였다면 이를 포기하면 됨(제11.18조제2항).

- 한편, 한국내 미국 투자자는 일단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면 ISD 청구는 불가능한 특칙(Fork-in-the-road) 적용(부속서11-마)

※ 택일 방식(Fork-in-the-Road): 국내법원과 국제중재중 하나를 택일

4. 중재의 절차의 진행

- 중재인의 선정(제11.19조)

- 국제중재는 3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Tribunal)에서 심리
 - 투자자와 피소국 정부가 각각 1인을 임명하고,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의장중재인을 선임
 - 중재 제기후 75일 이내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으면 ICSID 사무총장이 제3국적의 중재인 임명 가능

※ ICSID 협약에 따라 ICSID 회원국(147개)은 중재인 후보 4명, 조정인 후보 4명을 사전에 지명해 둠(총526명 등재).

- 중재의 수행(제11.20조)

- 모든 중재절차에서 영어와 한국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
- 제소한 투자자 모국 정부 및 외부조언자(amicus curiae)의 의견제출권을 인정
-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안전 항변 등에 대한 신속 심리 규정
-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권리 보전, 관할권 보장을 위해 잠정적 보호조치를 명령 가능
 - 다만, 압류를 명하거나 위반임을 주장하는 조치가 적용되는 것을 금지하지는 못함.
- 상소절차 수립 노력

- 투명성(제11.21조)

- 중재심리 및 제출 서류를 일반에게 공개(단, 비밀정보는 보호)

- 준거법(제11.22조)

- 한·미 FTA 협정과 적용가능한 국제법 규칙
- 투자자가 당초 당사국 의도와 다르게 협정 해석을 임의로 하여 중재판정부가 엉뚱한 판정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 당사국 정부가 공동으로 내리는 협정의 해석 결정은 중재판정부를 구속

5. 중재판정의 효력(제11.26조)

□ 중재판정은 단심제로서 확정력을 가짐(binding and final).

※ 향후 3년내 양 당사국은 중재판정의 재심을 위한 양자간 상소 메커니즘 도입 가능성을 검토 예정(부속서11-라)

□ 최종적인 패소판정을 내리는 경우, ①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가능한 이자의 지급 또는 ② 재산의 원상회복으로 한정

○ 중재판정을 통해 해당 정부조치의 취소·변경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명령은 불가

□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에서의 판정의 집행을 규정

□ 피청구국의 판정 불이행

○ 피청구국이 최종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협정 제22.9조에 따라 패널이 설치되어 국가간 분쟁해결절차가 적용

※ 한·미 FTA는 2004년 미국 BIT 모델 문안을 기초로 수정·보완

구분	항목	1994 NAFTA(11장)	2004년 미국 모델투자협정	한·미 FTA(11장)	비고
실체적 요소	대우의 최소기준	타방당사국의 투자자를 국제법에 따라 대우(1104조)	외국인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대우기준(5조, 부속서) * 2001.7. NAFTA 자유무역위원회 해석선언 반영	외국인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대우기준(11.5조, 부속서11-가)	중재판정부의 '국제법' 확장해석에 대한 우려 불식
	수용 및 보상	수용에 대한 보상원칙만 규정(1110조) - 간접수용 정의와 판단법리 결여	수용 부속서 신설 - 간접수용 정의, 판단법리, 공공복지 목적 정책(보건, 환경, 안전)에 대한 원칙적 예외 등 규정	간접수용의 범위를 제한(부속서11-나) ○ 간접수용 판단법리 ①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② 합리적 기대이익 침해 여부 ③ 정부행위의 성격 - 우리나라 수용법제의 핵심 개념인 '특별희생' 법리 추가 ○ 간접수용의 예외 -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의 비차별적 규제 행위에 보건, 안전, 환경 외에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 추가 * 예시적 열거임을 각주19에 명기	* 2004 미국 모델 BIT의 수용부속서 내용을 도입, 증보 ※ 보상대상에서 '재산상 이익(property interest)'을 제외하여 '재산권(property right)'으로 한정(부속서한)
	과세와 수용	(규정 없음)	(규정 없음)	별도의 부속서 채택(부속서 11-바) -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이 아님	※ 과세조치의 수용 해당 여부는 사전에 양국의 조세 당국에 우선 회부(제23.3조)
	단기 세이프가드	(규정 없음)	(규정 없음)	별도의 부속서 채택(부속서 11-사) - 국제수지악화, 외환위기 등 심각한 대내외 여건 변화시 외국환거래 통제 가능 ※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면 협정 의무위반이 아니므로 ISD 대상이 아님.	단기 SG 발동근거 규정 - 외국환거래법 제6조 및 IMF 규정에 의거 * 우리나라만 발동 가능
절차적 요소	중재인 선정	90일내 중재판정부 미구성시, ICSID 사무총장이 임명 - 의장중재인 명부(45인)에서 제3국인 임명(1124조)	75일내 중재판정부 미구성시, ICSID 사무총장이 임명 - 의장중재인 국적요건 없음	75일내 중재판정부 미구성시, ICSID 사무총장이 임명 -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의장중재인은 제3국인으로 임명 (11.19조3항)	신속 절차

구분	항목	1994 NAFTA(11장)	2004년 미국 모델투자협정	한·미 FTA(11장)	비고
절차적 요소	현실적 중재지	(규정 없음)	(규정 없음)	현실적 중재지 결정에 있어 당사자의 편의성, 증거접근성 등 고려(11.20조2항)	* 실제 심리절차 진행
	중재언어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전체 중재과정에서 <u>한국어와 영어가</u> 모두 공식 중재언어임을 규정 (11.20조3항)	
	투명성	(규정 없음)	투명성 조항 신설(29조) - 정보공개 범위에 관한 이의절차 미비	투명성 조항(11.21조) - <u>보호정보에 대한 중재판정부 결정에</u> <u>대한 이의절차 신설(공동위원회에서 결정)</u>	밀실재판에 대한 우려 불식위해 중재자료, 심리절차 등 공개
	비분쟁당사국 의견제출권	비분쟁당사국의 의견제출권 보장(1128조)	비분쟁당사국의 의견제출권 보장 (28.2조)	비분쟁당사국의 의견제출권 보장(11.20조4항) - 분쟁당사자 요청시 구두의견을 서면화	* <u>협정의 해석에 국한</u>
	제3자 의견제출권	(규정 없음)	제3자(amicus curiae) 의견제출권 조항 신설(28.3조)	제3자(amicus curiae) 의견제출권 조항 (11.20조5항)	중재절차에 시민사회 등의 참여 보장
	본안전 항변	(규정 없음)	신속처리 규정 신설(28.4~6조)	신속처리 규정(11.20조7항) * 소송경제와 부당한 절차지연 방지	* 법률상의 문제에 대한 피 청구국의 이의제기 및 중 재판정부의 관할권 이의제기
	중재결정 사전검토	(규정 없음)	최종결정 전, 판정문 초안을 회람, 이에 대한 의견제출권(28.9조)	최종결정 전, 판정문 초안을 회람, 이에 대한 의견제출권(11.20조11항)	단심제의 단점 보완 (상소메커니즘 수립 전까지 적용)
	상소 메커니즘	(규정 없음)	향후 상소기구 수립에 관한 별도의 다자협정 발효시, 상소메커니즘의 적용위해 합의 노력(28.10조) - 협정발효 후 3년내 양자간 상소메커니즘 수립 고려 (부속서)	향후 상소기구 수립에 관한 별도의 다자협정 발효시, 상소메커니즘의 적용위해 합의 노력(11.20조12항) - 협정발효 후 3년내 양자간 상소메커니즘 수립 고려 (부속서11-라)	※ ICSID협약취소사유(제52조) ① 중재판정부의 부적절한 구성, ②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월권, ③ 중재인의 부패, ④ 근본적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⑤ 이유불기재
	부속서의 해석	(규정 없음)	부속서의 해석(31조) - 피청구국의 조치의 유보 사항 여부에 대해 공동위원회에서 해석(중재판정부를 구속)	부속서의 해석(11.23조) - <u>피청구국이 항변으로 위반조치가</u> <u>유보항목이라고 주장하는 경우,</u> <u>공동위원회의 해석 요청(중재판정부를 구속)</u>	※ 공동위원회는 요청후 60일내 결정을 서면 제출 - 기한내 결정 없으면 중재판정부가 판단
유보	공공질서 예외 등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공공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의 설립·인수에 대해 내국민대우, 이행요건 부과에 대한 권리 유보(부속서III 첫번째 유보)	* 외국인투자촉진법 4조 등 반영 (우리나라에만 적용)

1 ISD는 우리에게 필요한가?

(반대측 주장)

- ISD는 자본 수출국인 미국을 위한 제도라서 NAFTA에서 멕시코기업이 미국 정부를 중재에 회부한 사건은 하나도 없음.
- 한-미처럼 사법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재판절차를 통하여 손해를 회복하면 충분함.
- ISD는 개인간의 계약불이행을 민사절차가 아닌 국제중재에 전가하며, 개인간 민사계약상의 불이행을 국가에게 전가시키게 됨.
- 지금까지 우리기업이 한번도 제소한 적이 없는 제도이므로 우리기업을 위한 제도라는 정부주장은 근거 없음.

- 우리나라는 1968년이래 2,675.8억불을 해외에 투자하고 1,789.5억불을 유치하여 해외투자가 외자 유입보다 더 활발하므로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 진출한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해 ISD가 필요
 - 특히, 2006년부터 현재까지 우리의 대미투자(345.9억불)는 대한투자(99.4억불)의 3배 이상
- 우리 기업이 ISD를 이용한 실적이 없었으나, 추후 우리 투자자가 외국에서 차별적이거나 부당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활용 가능한 ISD제도를 유지할 필요
- ISD 제도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관련 분쟁발생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중재를 희망하므로, 투자유치국 법원에 대한 신뢰가 낮을 경우 중립적인 제3의 중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어 발전된 제도임.
 - ISD제도는 이러한 투자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줌으로써 보다 원활한 투자자본의 흐름을 보장
- 국제분쟁해결절차가 결코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은 그간의 사례를 통해 확인 가능

- 미국 기업이 외국 정부를 ISD 제소한 108건 중 미국 기업은 15건 승소하였으며, 22건은 패소
- 중재위원 선임절차가 비슷한 WTO상 한-미 분쟁의 경우, 확정판결 사건 10건 중 우리의 제소건이 7건, 피소건이 3건인데, 한국이 7건을 승소(2배이상의 승률)

《 미국 관련 ISD 현황 》

- 미국 관련 ISD는 총 123건으로 미국 기업의 제소건은 108건, 미국 정부의 피제소건은 15건임(UNCTAD의 국제투자조약에 근거한 분쟁 기준, 2010년말 현재).
- 미국 기업이 제소한 108건중 15건 승소, 22건 패소
- 미국 정부 피제소 15건중 6건 승소

구분	국가 승소	투자자 승소	합의	계류중	기타	계
제소 (미국기업 → 외국정부)	22 (20.4%)	15 (13.9%)	18 (16.7%)	48 (44.4%)	5 (4.6%)	108
피제소 (외국기업 → 미국정부)	6 (40%)	-	-	9 (60%)	-	15

- ISD는 개인간의 계약불이행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투자유치국 정부(중앙 정부·주정부·지방정부)가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개인간 민사계약과는 무관)

2 국가의 공공정책 자율권이 훼손된다?

(반대진영측 주장)

- ISD 도입으로 앞으로 정부는 공공정책을 펼 수 없게 됨.
 - 아무리 공공 영역이라 하더라도 일단 미국인 투자자들의 사업과 경쟁관계로 파악되는 순간, 미국 투자자들은 해당 공공사업을 위한 국가의 지원체계 자체를 문제 삼을 것임.
 - ISD 도입 자체가 사전 검열처럼 “된서리 효과(regulatory chill)”를 유발하는바, 국가의 정책 추진의 자율성이 제약 당함.

- 기본적으로 정부 조치가 투명하고, 정당하며, 비차별적인 경우에는 협정 위반이 아니므로, 정부의 ISD 피소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
- 특히, 한·미 FTA 협정상 ISD 제소 요건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한·미 FTA와 관련된 모든 조치(공공정책 포함)가 ISD 제소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님.
 - ISD 제기는 ① 투자유치국이 의무(협정상의 의무, 투자계약, 투자인가)를 위반하고, ②그로 인해 투자자가 손해 또는 손실을 입은 경우에만 가능한바, 실제 발동 요건도 엄격히 제한(협정 제11.16조).
 - 우리 공공정책상 필요한 사항은 협정의 적용배제, 예외설정, 개별분야 정책권한 확보, 현재·미래 유보 등을 통해 우리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해 두었으므로, 이들 분야에서는 ISD 제소 근거가 없음 (☞ IV항 참조)
 - 협정적용이 처음부터 배제되는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부속서I(현재 유보)과 부속서II(미래유보)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조치는 협정상 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ISD 제기 근거가 없음.
 - 우리 국내법규상 보건, 환경, 미풍양속 등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들(사회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공기업 민영화, 교육·에너지·운송·방송·환경 서비스 등 44개 분야)은 협정문에 유보로 처리된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 정부는 당연히 필요한 조치 행사 가능

- 특히, ISD 제소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정부의 공공정책이 제한되는 것이 아님.

- 되서리효과로 공공정책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주장 관련, 공공정책을 투명하고 일관되게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ISD 제소 가능성이 낮으며, 합리적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ISD 제도로 인해 권한의 제약을 받지 않음.

3 중재 판정부는 중립적인가?

(반대측 주장)

- 중재 판정부는 중립적이지 않으며, 미국 투자자에게 유리할 것임.
 -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하에 있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총장이 의장 중재인을 임명
 - ICSID 중재인은 오로지 금융이나 상업 등에 관련된 법전문가일 것을 요구할 뿐으로, 초국적 기업측에 편향되어 있음
 - 국제중재기관에서 활동하는 한국 국적 변호사는 소수에 불과
 - 국제중재 판정의 결과는 예측 불가능

□ 한·미 FTA 협정은 제3의 의장중재인은 양 당사자 합의로 선정하되, 의장중재인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ICSID 사무총장이 제3국인을 임명하도록 규정(제11.19조제3항)하여 중립성을 보장

□ 또한, 한·미FTA는 중재심리과정 및 각종 자료를 일반에 전면 공개하는 투명성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중재 판정의 신뢰성을 더욱 제고

※ 중재인은 절차개시전에 소정의 보수 이외에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나 보상도 받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고 분쟁당사자들과의 과거 및 현재의 각종 관계를 소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토록 강제하고(ICSID 중재절차규칙 제6조) 있으며, 중재인의 부패를 중재판정 취소사유로 하고 있음.

□ 제도적·경험적 관점에서 볼 때, 제3의 중재인을 워싱턴 D.C.에 소재한 ICSID 사무총장이 임명하게 한다고 해서 중재판정부가 중립적이지 못하며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편파적 제도라면 현재와 같이 147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절차로 자리 잡을 수 없었을 것임.

□ 실제로, NAFTA 사례 중 ICSID에서 중재판정부의 최종 결정이 있었던 사례 총 13건을 분석해 보면, 중재인 임명과 판정의 편파성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이 확인할 수 있음.

- 제3의 중재인이 합의되지 않아 ICSID 사무총장이 임명한 사례 총 4건중 미국측에 유리한 판정 결과 2건, 불리한 판정 결과 2건이었던 반면,
- 제3의 중재인을 분쟁당사자 양측이 합의하여 선정한 사례 총 9건 중, 미국측에 유리한 판정 결과 6건, 불리한 판정 결과 3건이었음.
- 미국 기업이 외국 정부를 제소한 108건 중 미국 기업 승소는 15건, 미국 기업 패소는 22건임.
- 2011년 6월 현재 ICSID 중재사건 중 중재인, 조정인 및 임시 위원회 회원 역임자의 국적별 현황(상위 10개국)은 다음과 같음.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스위스	스페인	멕시코	독일	호주	이탈리아
137	126	107	89	77	53	39	38	37	34

(자료: ICSID, The ICSID Caseload - Statistics, 2011)

- ICSID 협약상 각 회원국별로 동일하게 중재인 후보 4명, 조정인 후보 4명, 이렇게 모두 8명을 지명함(현재 총 526명이 등재).
- 역임자의 국적별 통계에서 미국인 수가 많은 것은 전체 ISD 사건 390건 중 미국(투자자 제소 또는 정부 피소)이 관여된 사건이 123건에 달하기 때문에 당사자(제소 투자자 또는 피소 정부)가 중재인 1명을 지명토록 하고 있는데 따른 당연한 현상임. 즉, 미국인이 ICSID 중재사건을 수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주장임.
- 우리나라는 1967년 ICSID(1966년 발효, 147개국)에 가입한 이래 ISD 제소, 피소 건수는 없음.

4 사법주권이 훼손된다?

(반대측 주장)

- 중재판정부 결정이 국내법 해석에 우월한 권한
- 한국의 검찰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국제 중재에 회부 가능

- 중재판정부 결정이 국내법 해석에 우월한 권한을 가지지 않음.
 - 미국인 투자자가 한국 법원 제소시 한국 사법부가 한·미 FTA 조항을 해석하고 이를 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
 - 미국인 투자자가 국제중재기관 제소시 국내법이 아닌 한·미 FTA 협정문을 기준으로 국제중재판정부가 판정을 하나, 양 당사국 정부가 문제된 협정 조문의 해석을 하게 되면 ISD의 중재판정부는 동 해석을 그대로 따라야함(협정문 제11.22조 제3항).
 - 이는 중재판정부가 양국이 협정 체결시 의도한 내용과 다른 취지로 협정문을 해석·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 중재판정부가 국내사법판정을 재심하게 되어 사법주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
 - 중재판정부가 국내사법 관련 문제를 심리하게 되는 경우는, △ 적법절차 등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였는지(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부인, 정당한 변론권의 박탈 등 재판 절차를 명백히 부당하게 진행) 등을 그 대상으로 할 뿐임.
 - 예컨대, △ 국내 사법절차상 항소를 위해 필요한 보증증권 매입의 무가 과도하여 자국민과 외국 투자자를 차별하여 사실상 항소를 곤란하게 만든 경우(Loewen v. 미국, 1998), △ 사법부가 강제집행 절차와 관련하여 외국 투자자에게 부당한 조치를 하는 경우(Petrobart v. 키르키즈스탄, 2003) 등임.
 - 법해석 등에 관한 사법 판단 자체가 협정 위반으로 인정된 예는 파악된 바 없음.

5 투자자 제소시 중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나?

(반대측 주장)

- 한·미 FTA에서 당사국은 투자자의 중재 청구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재량권이 전혀 없음.

- 사전동의조항은 투자협정의 핵심적 규정이며, 당사국 재량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중재절차가 시작되도록 개정하는 것은 ISD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위배됨.
- ISD가 포함된 우리 FTA(6개) 전부와 한·중 투자보장협정 등 대부분의 투자협정에 이러한 사전 동의조항(무조건적 동의조항 또는 동의의무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분쟁해결절차 도입으로 제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나, 정부의 정당한 비차별적 정책 조치에 대한 예외 규정 등에 비추어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ISD에 회부하는 식의 남용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됨.
- 통상 중재에 소요되는 기간(2~3년)과 비용을 감안시, ISD 청구 제기가 남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과장된 주장

6 환경정책도 ISD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반대진영측 주장)

- “메탈클래드 사건”에서 보듯이 정당한 환경정책이라도 국제 중재에 회부될 수 있음.

- 동 사건은 정부의 정당한 환경정책도 도전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다는 법적으로 보장되었던 투자자의 소유권이 부인되어 투자 가치가 전면적으로 영구히 박탈되는 경우에는 간접수용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임.
- 멕시코 정부는 지방에 소재한 쓰레기 매립장을 인수하고자 하는 미국 투자자에게 쓰레기 매립장 영업에 필요한 모든 인가가 완비 또는 발급될 것이라고 보장했지만, 동 매립장 인수 및 처리시설 공사 후, 군 정부가 허가발급을 거부하여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 미국 투자자는 여전히 동 쓰레기 매립장의 법적 소유권을 갖고 있으나 멕시코 정부의 조치로 동 매립장의 투자 가치가 전면적으로 박탈된 바, 중재재판부는 이를 간접 수용으로 판정함.
- 동 사건과 같이 정부조치가 명백히 자의적이고 부당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가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간접수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환경정책은 ISD 제소 우려 없음.
- 한·미 FTA는 NAFTA와 달리 환경정책 등 공공복지 목적 정책은 간접수용에 대한 예외가 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한·미 FTA하에서는 환경정책의 입안·집행에 제약이 없을 것임.

(반대진영측 주장)

- 간접수용 보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한국의 사법질서에 존재하지 않음.
- 부동산 정책 중 각종 지구 지정, 예를 들어 개발행위, 건축행위 등의 제한·규제는 투자자 국가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헌법이 정한 범위 이상의 보상을 투자자에게 하도록 강요
- 미국인 투자자를 내국인보다 더 우대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침해

-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법상으로 간접수용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으나, 헌법상 재산권의 제한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헌법 제23조 제3항), 헌법재판소도 보상이 필요 없는 사회적 제약과 구별하여 보상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간접수용에 해당하는 재산권 침해시 정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한바 있음.

* 헌법재판소 판례(97 헌바 26) : 10년이상 도시계획 미집행 상태로 환매권도 부여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보상규정이 없는 도시계획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

- “부동산 가격 안정화 규제 이외의 부동산 정책은 ISD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한·미 FTA에 규정된 간접수용의 예외 사유인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으로 열거된 공중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 가격안정화는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의 예시이므로, 그 외의 분야도 공공복지 목적에 해당할 경우 간접수용이 아님(부속서 11-나 각주 19).
 - 개발행위, 건축행위 등에 제한·규제, 그린벨트 지정도 공공목적을 위하여 비차별적으로 집행되는 경우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음.
- 더군다나, 간접수용은 정부조치가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일 때 (extremely severe or disproportionate)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으므로, 우리 정부조치가 이에 해당되어 간접수용을 구성하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 “간접수용이 헌법이 정한 범위 이상의 보상을 투자자에게 하도록 강요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
 - 한미 FTA에서는 우리측 요구에 따라 수용 및 보상조항을 통한 보상 범위에서 ‘재산권’만을 규정하고 ‘재산상 이익’은 배제시켜 우리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범위와 조화를 이룸.
 -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권리가 아닌 단순한 기대이익, 반사적 이익, 경제적 기회 등은 재산권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2002 헌마 484)
- “미국인 투자자를 내국인보다 더 우대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침해” 주장은 헌법상 평등권을 오해한 잘못된 주장임.
 - 우리 헌법 제11조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 ※ 헌법상 외국인은 우리 국민에 대한 일반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위가 보장됨(헌법 제6조제2항).
 - 수용에 대한 보상은 국제법상 일반원칙이며,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를 내국인과 다르게 보호하는 것만으로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없음.

8

BIT보다 FTA에서 ISD의 제소가 더 많다?

(반대측 주장)

- BIT 보다 투자자 보호 범위가 넓은 FTA에서의 ISD는 제소가능성이 높음.
 - 즉, BIT는 국내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고 허가된(설립후 투자)를 제소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한미 FTA는 “설립전 투자”까지 포함하고 있음.
- 한·미 FTA에서 제소가 발생하여 패소할 경우 그 영향력은 FTA 특혜관세 중단이라는 관세보복도 야기할 수 있음.

□ FTA가 BIT보다 반드시 투자자 보호 범위가 넓어 제소 가능성이 높다고는 볼 수 없음.

- ISD 제기는 협정상의 의무위반을 실체적 요건으로 하는데, FTA와 BIT간에는 이러한 협정상의 의무 범위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대우의 최소기준, 수용 및 보상, 송금 보장, 이행요건 등) 투자자의 보호 범위가 “설립전 투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ISD 제기 대상이 넓어진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

※ “설립전 투자”는 단순히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잠재적 투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며, 실제 투자를 위해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함(즉, 투자를 시도 중인 (“attempt to make an investment”) 것을 지칭)

한편, 한·일 BIT에서처럼 BIT에서도 ‘설립전 투자’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가 있어 BIT가 반드시 ‘설립후 투자’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님.

- 제소 가능성과 관련, 2010년말 현재 총 390건의 ISD 사례중 BIT상 ISD 제소는 303건(78%)이며, FTA에 근거한 ISD 사건은 51건(13%)에 불과

□ 중재판정 불이행으로 무역보복을 하려면 국가간 분쟁절차 회부를 거쳐 FTA 협정위반이라는 패널 판정을 받아야 하므로 실제로 무역보복에 이르는 경우는 매우 드뭄.

- 당사국의 중재재판부 관정 불이행으로 인한 종국적인 보복조치 규정은 한·칠레 등 우리의 기체결 FTA에서도 규정

《 전체 ISD 현황 》

○ 중재 패널 유형에 따른 현황(총 390건)

(2010년말 현재)

계	ICSID	UNCITRAL	스톡홀름 상공회의소 (SCC)	국제상공 회의소 (ICC)	임시중재	카이로 국제상사 중재센터	기타
390	245 (62.8%)	109 (27.9%)	19 (4.9%)	6 (1.5%)	4 (1.0%)	1 (0.3%)	6 (1.5%)

○ 판정 현황

계	종결 사건(197)			계류중	기타
	국가 승소	투자자 승소	합의		
390	78 (20.2%)	59 (15.1%)	60 (15.4%)	164 (42.1%)	29 (7.4%)

9 호주-미국 FTA에 ISD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반대측 주장)

- 호주-미국 FTA는 ISD를 제외

- 미국과 호주 양국은 대외적으로 양국간 경제발전단계가 유사하고 양국이 동일한 영미법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양국간 FTA에 ISD를 포함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됨.
- 단, ISD 제외 댓가로 호주가 미국에 대한 투자 사전심사 기준액을 상향 조정(2억 호주불 → 10억 호주불)해 주는 등 큰 대가를 지불했던 것으로 파악
- 아울러 여전히 '상황변화시' ISD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도록 규정(미·호주 FTA 협정문 제11.16조).
- 미·호주 FTA 체결 당시(2004), 호주의 외국자본 유입이 호주의 해외투자 보다 월등히 많았고, 미국의 대호투자가 호주의 대미투자를 상회하고 있어 호주로서는 ISD 도입 유인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
 - ※ 세계 → 호주: 1조1,519억 호주달러/ 호주→ 세계: 6,731억 호주달러
 - ※ 미국 → 호주: 3,623억 호주달러 / 호주 → 미국: 2,797억 호주달러
- 자원부국인 호주의 경우 외국인투자 중 자원개발관련 투자가 금액 기준 58%를 차지
- 또한, 2011.4월 신통상정책으로 인해 ISD 도입에 부정적인 자국의 입장 때문에 호주의 해외투자에 대한 보호수준이 약화되는데 대한 우려도 호주국내에 있음.
- 호주는 현재 기체결 FTA 6개중 4개에 ISD를 포함하고 있으며, 23개국과 체결한 BIT 대부분이 ISD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UNCTAD DB, 2011.6.1 기준)

- ISD 포함 FTA: 싱가포르(2003), 태국(2005), 칠레(2009), 뉴질랜드 및 ASEAN(2010)
- ISD 미포함 FTA: 미국(2004), 뉴질랜드(1983)
- ISD 포함 BIT: 중국(1988), 베트남(1991), 파푸아뉴기니(1991), 폴란드(1992), 헝가리(1992), 홍콩(1993), 인도네시아(1993), 루마니아(1994), 체코(1994), 라오스(1995), 필리핀(1995), 아르헨티나(1997), 페루(1997), 파키스탄(1998), 칠레(1999), 인도(2000), 우루과이(2002), 이집트(2002), 스리랑카(2002), 리투아니아(2002), 멕시코(2007)

10 미국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던데?

(반대측 주장)

- 미국 내에서 조차 사법부, 정치권, 시민단체 반대

- NAFTA에 ISD가 도입된 이후, 미국 정부의 피소 사례 증가로 미국내 일각에서는 ISD에 대한 비판 의견(당시 미국 내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내국인 투자자를 차별할 수 있다는 우려 및 공공정책적 규제권의 위축 우려 등)이 대두된 바, 2004년 BIT 모델 문안을 개정하여, 관련 우려사항을 반영

(실체적 측면)

- 최소대우 기준을 국제관습법적 기준으로 명확히 한정하는 한편, 수용 관련 부속서를 채택하여 간접수용의 정의, 판단법리, 공공복지정책에 대한 예외 등을 명시

(절차적 측면)

- 투명성 조항 도입(중재자료와 심리절차 공개), 제3자 의견제출권 보장, 남소 방지 규정(본안전 항변에 대한 신속처리 절차 규정 등), 단심제의 단점 극복(최종판정 이전에 판정문 검토 절차, 협정발효후 상소메커니즘 수립 고려 등)

※ 반대측에서 주로 인용하는 비판론은 모두 2004년 미국 BIT 모델문안 도입 이전에 제기된 사항

- 한·미 FTA는 미국의 2004년 BIT 모델 문안 수정 내용을 반영하면서도 실체적, 절차적으로 우리 법·제도상의 법리를 포함하여 ISD 제도를 더욱 개선함.
- 간접수용 부속서 문안을 대폭 수용하여 우리 수용법제의 핵심개념인 '특별희생(special sacrifice)'의 법리 등을 규정하고,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을 추가하여 공공정책적 규제권을 강화

- 한국어·영어를 모두 공식 중재언어로 규정하고, 의장중재인의 제3국 요건을 명기하였으며, 투명성 규정·제3자 의견제출권·비분쟁 당사국 의견제출권 등을 규정
- 본안전 항변에 대한 신속처리 절차, 협정발효후 양국간에 적용될 상소 메커니즘 수립 고려 등도 포함

IV

우리의 공공정책 자율권은 보장되어 있나 ?

한·미 FTA 협정내용 중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로 인해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우리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 자율권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

1 협정의 적용배제

- 공공퇴직제도·법정사회보장제도(제13.1조제3항가호)(330쪽1)
 - 공공퇴직제도(예:국민연금) 및 법정사회보장제도(예: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중앙은행 통화당국에 의한 금융서비스(제13.1조제3항나호)(330쪽)
 - 중앙은행(한국은행), 통화관련 국가기관(기획재정부 등) 및 국가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서비스
- 국책금융기관(제13장 서한의 “일정 정부 기관”)(360쪽)
 - 국책금융기관(총 8개: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공사, 수출입은행, 한국수출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투자공사)
- 정부제공 공공서비스(제12.1조제6항)(301쪽)
 -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소방, 경찰, 교정 서비스 등)
- 보조금
 - 한·미 FTA에는 보조금 규정 부재(특히, 보조금에 대하여는 투자, 서비스 관련 의무 적용배제 명시(제11.12조제5항나호, 제12.1조제4항라호)) (269쪽, 301쪽)
- 도박 및 베팅 서비스(제12장 서한)(321쪽)

1) 쪽수는 국회에 제출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한글본 협정문 기준임.

2 예외

□ 일반적 예외

-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무역원활화, SPS, TBT(제2~4, 6~9장)에 대해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가 적용됨(제23.1조제1항)(534쪽).

*공중도덕 보호 조치, 인간·동물·식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

- 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제12,14,15장)에 대해 GATS 제14조의 일반적 예외가 적용됨(제23.1조제2항)(534쪽).

*공중도덕 보호 조치, 인간·동물·식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

□ 필수적 안보(제23.2조)(534~535쪽)

- 우리나라의 필수적 안보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우리나라가 판단하는” 조치는 협정 전체의 예외임.

※ 분쟁해결절차에서 우리나라가 “필수적 안보” 예외를 원용하면 ISD 중재판정부 또는 패널이 이를 그대로 인정(제23장각주2)(535쪽)

□ 비차별적 과세조치(제23.3조)(535~537쪽)

□ 비차별적 통화·신용·환율정책(제13.10조제2항)(335쪽)

□ 건전성 조치(제13.10조제1항)(335쪽)

- ① 금융소비자 보호, ② 금융기관 건전성, ③ 금융제도 안전성을 위한 건전성 조치

□ 우리 외국환거래법 제6조상의 단기세이프가드조치(부속서11-사)(297쪽)

□ 간접수용 예외(부속서11-나)(291~292쪽)

- 공공복지(공중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 등)을 위한 비차별적 규제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음.

3 개별 분야 정책권한 확보

□ 정부조달

- 학교급식용 식재료 국내산 농산물 우선 구매(부속서17-가 제5절 대한민국 양허표 제1항)(428쪽)
-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부속서17-가 제5절 대한민국 양허표 제2항가호)(428쪽)
- MRO(소모성 행정용품) 공급업체를 중소기업으로 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부속서17-가 제5절 대한민국 양허표 제2항가호)(428쪽)
- 농수축산물 공공비축제도* 유지(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부속서17-가 제1절 대한민국 양허표에 대한 주석 제5항)(422쪽)
* 2005년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 및 쌀소득보전제 도입
- 민간투자사업 발주시 중소기업 참여 장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부속서17-가 제5절 대한민국 양허표 제2항나호)(428쪽)
- 긴급상황시 국산 의약품 우선 구매 등 국민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달 관련 자율성 확보(제17.3조제1항(정부조달협정제23조 준용))(409쪽)

□ 금융

- 정부지원기관(총 5개: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에 대한 조세 면제, 채권 보증, 손실 보전 등 특별대우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 유지(현재유보: 부속서Ⅲ 제1절 12번째 유보)(702쪽)
- 보험회사, 은행, 상호저축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의무 유지(부록Ⅲ-가 나호 및 라호)(687쪽)
- 예금·대출 이자율, 예금 만기 및 관련 수수료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 유지(부록Ⅲ-가 카호)(688쪽)

□ 공공 서비스

- 정부가 독점을 지정하거나 공기업을 설립 운영하는 권한과 공공서비스 요금 승인 권한 유지(제16.2조, 제16.3조 및 제16장각주3)(401~402쪽)

- 공기업 민영화 및 정부권한행사 서비스 민간 이양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 권한 유지(미래유보: 부속서II 2번째 유보)(618~619쪽)

□ 외국인투자 유치

-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투자 설립·인수에 대한 제한조치 채택가능 (미래유보: 부속서II 1번째 유보)(616~617쪽)

□ 지적재산권

- 의약품 등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권 발동 권한 유지(제18.9조제3항)(450쪽)

4 **현재유보 · 미래유보**

※ 유보대상의무(총6개)

- 투자분야(4개): 내국민대우(제11.3조), 최혜국대우(제11.4조), 이행요건 부과금지(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국적제한금지(제11.9조)
- 서비스분야(4개): 내국민대우(제12.2조), 최혜국대우(제12.3조),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 최소기준대우(제11.5조), 수용 및 보상(제11.6조), 송금(제11.7조) 등은 그 성격상 유보 대상이 되지 않는 기본적 의무임.

□ 투자·서비스 분야 현재유보 47개 (별첨1)(543~597쪽)

※ 현재유보: 협정상 유보대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를 나열한 목록

□ 투자·서비스 분야 미래유보 44개 (별첨2)(616~670쪽)

※ 미래유보: 향후 규제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규제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포괄적인 정책 자율권 확보)

□ 금융분야 현재·미래유보 18개 (별첨3)(684~708쪽)

별첨 1

한국의 투자·서비스 분야 현재유보 47개

번호	구분	유보 분야	대상 의무	내용
1	S	건설 서비스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	S	건설기계 서비스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3	S	자동차 정비·수리· 판매·폐기·검사 및 자동차등록 번호판교부	MA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 사업자 수 제한 명시
4	S	담배·주류 도소매	MA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 사업자 수 제한 명시
5	I	농축산물	NT	1) 쌀 및 보리 재배·투자 금지 2) 육우 사육에 대한 투자제한 명시(50%)
6	S	안경사	MA LP	1) 유자격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 2) 1개 업소 설치 요건
7	S	식품·의약품(한약재포함)· 기능성 식품 등의 도소매	MA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 사업자 수 제한 요건 명시
8	S	의약품 소매(약국)	MA LP	1) 유자격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 2) 1개 업소 설치 요건
9	S	철도운송	MA	사업자 수 제한 요건 명시
10	S	도로 여객 운송 (택시·노선 버스 제외)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11	S	해운 서비스 (국제화물운송, 도선업, 선박투자회사)	NT MA LP	1) 도선업의 적용중인 NT 제한 명시 2) 사무실 구비요건 명시 3) 설립형태 제한 명시(상법상 주식회사로 한정)
12	I	항공운송	NT SMBD	1) 외국인 투자 제한 명시(49%) 2) 이사회 의 국적제한 명시
13	S,I	항공운송(특수항공)	NT SMBD LP	1) 외국인 투자 제한 명시(49%) 2) 이사회 의 국적제한 명시 3) 사무실 구비요건 명시
14	S	도로운송 서비스 (주차장, 견인 등)	MA LP	1) 사무실 구비요건 명시 2) 사업자 수 제한 명시
15	S	쿠리어 서비스	MA LP	1) 사무실 구비요건 명시 2) 사업자 수 제한 명시
16	S,I	통신 서비스	NT MA LP	1)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투자 제한 명시 2) KT에 대한 투자 제한 명시 3) 국경간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한 명시 4)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17	S	부동산(중개-감평)	LP	사무실 구비요건 명시
18	S	의료기기 임대·정비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19	S	자동차 임대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0	S,I	해양조사 및 지도제작	NT	국적에 따른 차별적 절차 요건 명시
21	S	법률서비스	MA LP	1) 사업 형태 및 사업자 수 제한 명시 2) 사무실 구비요건 명시
22	S	노무사 서비스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3	S	변리사 서비스	MA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 사업 형태 및 사업자 수 제한 명시
24	S	회계·감사 서비스	MA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 사업 형태 및 사업자 수 제한 명시
25	S	세무사 서비스	MA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 사업 형태 및 사업자 수 제한 명시
26	S	통관 서비스	MA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 사업 형태 및 사업자 수 제한 명시

※ S:서비스, I:투자, NT:내국민대우, MFN:최혜국대우, PR:이행요건, SMBD: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MA:시장점근, LP:현지주재

번호	구분	유보 분야	대상 의무	내용
27	S	산업보건·안전 서비스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8	S	엔지니어링 서비스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9	S,I	옥외광고물전광판	PR SMBD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2) 회사 임원 및 프로그램 편성자의 국적 요건 3) 프로그램의 30%를 (국산) 공공 광고 편성 의무
30	S,I	인력 배차선원 배치 서비스	NT MA LP	1) 사업자 수 제한 명시 2)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3) 한국해양수산원에 의한 선원 교육 독점 규정
31	S	경비 서비스	MA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 사업 형태 제한 명시
32	S	간행물 유통	NT	외국 간행물의 수입·유통과 관련한 절차적 차별요인 명시 * 외국산 : 事前 문화부 추천 필요 * 국내산 : 事後 심사 (필요시)
33	S	항공기 정비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34	S,I	고등교육	NT MA SMBD	1) 이사회 국적 제한 명시 2) 사업 형태 제한 명시 * 반드시 비영리재단 형태로 사업 영위
35	S,I	성인교육	NT MA	1) 외국인이 영위 가능한 학원의 형태 및 종류 명시 (성인 대상, 학위 수여 금지) 2) 외국인 강사는 반드시 대졸 이상이어야 함
36	S	직업 훈련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37	S	수의 및 수산질병관리사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38	S	환경 서비스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39	S	공연 서비스	NT	외국인의 국내 공연 또는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진(promotion)과 관련한 절차적 차별 요인 명시 * 事前 추천 필요
40	S,I	뉴스통신 서비스	NT SMBD MA LP	1) 외국통신사는 국내통신사(연통)를 경유 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명시 2) 뉴스통신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25%) 3)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4) 연합통신 임원에 적용되는 국적제한 명시
41	I	혈액 제재	PR	대한적십자사의 독점 영역임을 명시
42	S,I	정기간행물(신문 제외)	NT SMBD MA LP	1) 정기간행물의 발행인·편집인에 적용 되는 국적 요건 (한국인만 가능) 2) 정기간행물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50%) 3) 외국 정기간행물의 한국내 지점은, 본국에서 편집된 내용을 국내에서 인쇄하여 배포할 수 있음을 확인함 (한국어가 아닌 경우로 한정)
43	S,I	농축산물 유통	NT MA	1) 육류 도매업에 대한 투자 제한 명시(50%) 2) “가축시장”은 농협 등에서만 개설할 수 있음 3) “공용도매시장”은 지자체에서 개설함을 명시 4) 서비스 chapter의 NT, MA 관련 규정은 WTO TRQ 이행을 위한 국내 제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시
44	S,I	방송 서비스	NT PR SMBD MA LP	1) 방송 세부사업별 외국인투자 제한 명시 2) 국산 영화·애니메이션 쿼터 명시 3)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국적요건 명시 4) PP의 간접 투자 제한 완화 약속 명시 5) 1개국 쿼타 관련 제한 완화 약속 명시
45	I	에너지(전력)	NT	1) 한전에 대한 투자 제한 명시(40%) 2) 국내 총발전 설비용량 중 외국인은 30%까지만 소유할 수 있음을 명시 3) 전력의 송·배전에 적용되는 외국인 투자 제한 명시(50%)
46	I	에너지(가스)	NT	가스공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명시 (30%)
47	S,I	스크린 쿼타	PR MA	스크린당 73일임을 명시

※ S:서비스, I:투자, NT:내국인대우, MA:최혜국대우, PR:이행요건, SMBD: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MA:시장접근, LP:현지주재

별첨 2

한국의 투자·서비스분야 미래유보 44개

번호	구분	유보 분야	대상 의무	내용
1	I	외국인 투자	NT PR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규제 도입 권한 유보
2	I, S,I	공기업 민영화 및 공공서비스의 민간 이양	NT PR SMBD LP	포괄적 유보 * 다만,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NT 보장
3	I	외국인토지	NT	포괄적 유보
4	S,I	총포·도검 및 화약류	NT PR SMBD LP	포괄적 유보
5	S,I	취약집단 (장애인, 소수 민족 출신 등 사회적 약자)	NT MFN PR SMBD LP	포괄적 유보
6	S,I	국가소유의 국가전자/정보시스템	NT LP PR SMBD	포괄적 유보(* 다만, 금융 분야는 적용 제외)
7	S,I	사회 서비스 (공공 서비스)	NT MFN LP PR SMBD	포괄적 유보
8	S	MA 포괄유보	MA	UR GATS 양허표를 기초로, 금번 KORUS FTA협상을 통해 신규 양허한 분야를 제외 하고는 MA의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유보
9	S,I	MFN 포괄 유보	MFN	1) KORUS 발효 전 협정은 MFN 적용 제외 2) KORUS 발효 후 협정에 MFN을 부여 * 단, 항공·해운·수산 분야는 MFN 제공 대상에서 제외
10	S,I	방송 서비스	MFN	위성방송 서비스 관련, MFN 포괄 유보
11	S,I	철도운송 서비스	MFN	철도운송 서비스 관련, MFN 포괄 유보
12	S,I	환경 서비스 (음용수, 생활폐수, 자연보호 등)	NT PR LP	포괄적 유보 * 단, 법령상 일부 인정되는 私人間 계약은 인정
13	S,I	원자력 에너지	NT PR SMBD LP	포괄적 유보
14	S,I	에너지 (전력)	NT PR SMBD LP	포괄적 유보 * 단, 부속서 1에 규정된 한전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은 제외
15	S,I	에너지 (가스)	NT PR SMBD LP	포괄적 유보 * 단, 부속서 1에 규정된 가스공사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은 제외
16	S,I	농축산물(인삼, 쌀, 홍삼)	NT PR LP	중개, 도매, 소매 포괄 유보
17	S,I	육상 여객운송 (택시 및 정기 여객운송)	NT MFN PR SMBD LP	포괄 유보
18	S,I	육상 화물운송 (쿠리어 제외)	MFN PR SMBD LP	포괄 유보
19	S,I	내륙주운 및 우주운송	NT MFN PR SMBD LP	포괄 유보
20	S,I	쌀의 저장 및 보관	NT	포괄 유보
21	S,I	우정사업 (비독점 영역)	NT	우정사업본부가 누리는 혜택 (공익 활용, 차량 대수 임의증가 권한) 유보

※ S:서비스, I:투자, NT:내국민대우, MFN:최혜국대우, PR:이행요건, SMBD: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MA:시장접근, LP:현지주재

번호	구분	유보 분야	대상 의무	내용
22	S,I	방송서비스	NT PR SMBD MA LP	다음 사항에 대해 포괄 유보 1) 매체간 교차 소유 2) 외국인의제 조항의 강화 권한(PP는 제외) 3) 이사의 국적 제한 4) 만화총량제 5) 외주제작 쿼터 등 다양한 새로운 쿼터 제도의 도입을 위한 권한 6) 방송법에 의한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 제공 사업에게 국산 프로그램의 의무 편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7) 외국방송 재송신에 관한 사항 *재송신 제도를 폐지코자 할 경우 기존의 PP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 추진 필요
23	S,I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NT PR SMBD MA LP	포괄 유보 * 방송으로 분류되던 통신으로 분류 되던, 해당 분야에 적용중인 외국인 투자 제한 수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명시
24	S,I	방송 서비스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MFN PR	포괄 유보
25	S,I	방송 서비스 (국산 영상물 인정 기준)	NT PR	포괄 유보
26	S,I	부동산 서비스 (중개-감평 제외 부동산)	NT PR LP	포괄 유보
27	S,I	지급 불능 및 구조조정 (법정 관리) 서비스	NT SMBD LP	포괄 유보
28	S,I	디지털 오디오비디오 서비스	NT MFN PR LP	포괄 유보 * 국산 디지털 오디오비디오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현격히 떨어질 때 활용 가능한 유보안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오디오비디오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 도입 가능
29	S,I	지점측량 및 관련 지도제작	NT	포괄 유보
30	S,I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등급판정	NT LP	포괄 유보
31	S,I	농업·수렵·임업·어업 부수 서비스	NT PR SMBD LP	포괄 유보 * 인공수정, 유전적 개량, 벼 및 보리의 도정, 미곡 종합 처리장 관련 활동 등
32	I	어업	NT	포괄 유보
33	S,I	신문 발행 및 배포	NT SMBD LP	포괄 유보
34	S,I	교육 서비스 (유아, 초·중등, 고등, 기타)	NT MFN PR SMBD LP	포괄 유보
35	S,I	보건의료 서비스	NT MFN PR SMBD LP	포괄 유보 * 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설립 가능한 영리 병원 예외
36	S,I	영화 서비스 (스크린쿼터를 제외한 여타 사항)	NT MFN PR LP	영화의 진흥(promotion), 광고, 후반제작 등에 대해 포괄 유보
37	S,I	문화재 보호	NT PR SMBD LP	포괄 유보
38	I	농어촌 관광	NT	포괄 유보
39	S,I	법률 - 외국법 자문사	NT SMBD LP	단계별 개방 계획 명시
40	S,I	회계 - 외국 공인회계사	NT SMBD LP	단계별 개방 계획 명시
41	S,I	세무 - 외국 세무사	NT SMBD LP	단계별 개방 계획 명시
42	S	전략물자	NT LP	포괄 유보
43	I	정부권한 행사 서비스	NT PR SMBD	포괄 유보
44	S,I	해운 - cabotage, 해상 여객 운송	NT MFN PR SMBD LP	포괄 유보

※ S:서비스, I:투자, NT:내국민대우, MFN:최혜국대우, PR:이행요건, SMBD: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MA:시장접근, LP:현지주재

별첨 3

한국의 금융분야 현재·미래유보 18개

번호	성격	유보 분야	대상 의무	내용
1	현재	보험	MA	1)상업은행, 상호저축은행, 증권회사의 2인 이하의 직원만이 같은 시간, 장소에서 보험을 판매할 수 있음. 2)보험판매 창구 수 등 보험상품의 판매방식을 제한하고, 단일 보험업자에 의한 보험상품의 은행판매 비율에 대해 제한
2	현재	보험	CBT	“강제적인” 보험 서비스를 구매할 법적 의무 충족 여부를 결정할 때 외국에서 공급받은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음. *해당 보험이 국내에서 구매될 수 없을 경우, 해외 보험도 고려 가능
3	현재	은행·기타	NT	1)외국금융기관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인 경우에만 한국의 상업은행·은행지주회사 지분 10% 초과 보유 가능 2)-금융위는 소유권 승인여부에 대한 추가적 승인기준 적용 -자연인은 지분 10% 초과 보유 불가 -주요사업이 금융서비스가 아닌 비금융기관은 지분 4% 초과 보유 불가. 단, 의결권 행사 능력 포기시 10%까지 가능
4	현재	은행·기타	NT	외국은행의 지점 설치에 대한 개별 인가 요구조건 명시 *단, 자회사인 은행의 지점은 인가 불요
5	현재	은행·기타	MA	한국증권선물거래소만이 한국에서 증권·선물시장 운용 가능
6	현재	은행·기타	MA	증권예탁결제원만이 한국에서 발행된 상장·비상장 증권의 예탁자 또는 증권회사 계정 간 증권 이전 매개체로서 기능 가능
7	현재	은행·기타	MA	한국증권선물거래소·증권예탁결제원만이 증권·파생상품에 대하여 청산·결제 업무 수행 가능
8	현재	은행·기타	CBT	한국 거주자·금융기관·외국기관지점은 한국에서 인가를 취득한 선물회사를 통해서만 역외 선물, 옵션, 특정 선도계약 체결 가능
9	현재	은행·기타	NT	1)외국은행·증권회사 지점의 영업기금 유지 의무 2)외국 지점은 그 본점과 별도의 법적 실체로 간주
10	현재	은행·기타	MA	외국금융기관 지점은 다음 업무 수행 불가 1)신용협동조합 2)상호저축은행 3)여신전문금융회사 4)종합금융회사 5)외화 및 원화자금중개회사 6)신용정보회사 7)일반펀드사무관리회사 8)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9)채권평가회사
11	현재	은행·기타	MA	국내에서 일정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기관은 자회사로만 설립 가능
12	현재	은행·기타	NT	정부지원기관(산은, 기은,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에 대해 채권보증, 손실 보전, 조세 면제 등 특별대우 부여 가능
13	현재	은행·기타	SMBD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의 최고 및 차상급 경영책임자 및 이사회 의 모든 구성원은 한국 국민이어야 함.
14	현재	은행·기타	NT	주택청약저축계정과 같은 주택계정 보유 금융기관 수 제한 가능
15	현재	은행·기타	MA	원화 현물환거래의 은행간 중개업은 기존 두 개의 중개업자로 제한
16	미래	보험	CBT	“강제적인” 제3자 보험서비스 구매 의무 충족 여부 결정시 외국에서 공급된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을 권리 유보 *해당 보험이 국내에서 구매될 수 없을 경우, 해외 보험도 고려 가능
17	미래	은행·기타	NT	정부 소유·지배 기관을 민영화 할 경우, 계속적 보증 및 한시적 추가 보증을 채택할 포괄적 권리 유보
18	미래	은행·기타	NT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권을 제한할 권리 유보

※ NT:내국민대우, MFN:최혜국대우, MA:시장접근, CBT:국경 간 무역, SMBD: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 한·미FTA에서 투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비판이 있으나, FTA를 추진하는 주요 목적 중의 하나는 외국인 투자의 자유화와 외국인 투자 보호 강화를 통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하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FTA에서는 OECD, UN 등의 국제기구의 규범에 맞추어 기업 설립 등의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및 그 외에 지식재산권과 같은 모든 자산을 포함하는 폭넓은 투자의 정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 우리는 이와 같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그간 우리가 체결한 한-칠레, 한-싱가폴, 한-EFTA FTA에서 이러한 폭넓은 정의를 사용하였으며, 한미 FTA 투자분야에서도 상기와 유사한 맥락에서 투자 범위를 논의하였음.
-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지에서도 ISD 등 국제적인 투자분쟁 제도에 대해서 투자분쟁제도의 주권 잠식 가능성을 우려하는 견해가 있으나, 1) 투자분쟁에 있어서는 수세기동안 외국인의 재산보호를 이유로 국제법을 적용해왔고, 2) 현재는 이러한 투자분쟁제도가 투자자와 투자 유치국 간의 이익 조절 기능을 담당, 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경제에 유익함이 입증되었으며, 3)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의 투자활성화와 투자안정화 시스템으로 순기능을 행사하고 있음.
 - ISD는 기본적인 투자진흥책의 하나로 그동안 국가들에 대한 청구액은 23억불을 상회 하였으나, 실제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2300만불에 그쳤음.
- ISD 조항의 경우 환경, 조세, 부동산 정책 등의 공공정책이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그동안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예가 되고, 이미 우리가 체결한 대부분의 경제협정에 ISD가 포함되어 있어 새로운 중대한 도전이 야기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향후 중국, 기타 국가들과의 협정 속에 정당한 ISD규정의 삽입을 통하여 우리의 대외투자를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

- 중국 내에 2만여개 우리 기업이 320억불을 투자하여 기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중 투자보장협정 개정협상에서도 동 제도의 포함을 강력히 요구

□ 또한 **ISD**는 국내 제도의 선진화에도 기여 할 것임.

해명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국제법무과
사진없음 매수 : 2매

주 책 임 자	국제법무과장 박장우	02) 2110-3670
담 당 자	검 사 나욱진	02) 2110-3671

제 목 : “법무부, 2006년 한-미 FTA 추진당시 투자자 국가소송제 사법주권 침해” 보도관련 해명

▣ “법무부, 2006년 한-FTA 추진 당시 내부분건 ‘투자자국가소송제 사법주권 침해’”와 관련된 2011. 10 31.자 기사(한겨레)는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요지

- 민주당 김재윤 의원 '11. 10. 30. 법무부 내부분건 공개
- 법무부는 '06년 당시 정부 공식입장과 달리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를 “사법주권 침해”라고 판단
-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 '06. 07.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문제 제기, 이로 인해 ISD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T/F 구성
 - T/F에서는 법무부, 건설교통부 등이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였으나 제도의 삭제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음

□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 법무부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를 “사법주권 침해”라고 판단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법무부는 ISD 관련 대응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사법주권 침해”라고 판단하거나 그러한 입장을 가진 바 없음
- 법무부는 협상 초기에 ISD 협정문 초안에 대해 국내법상 배치되는 조항들에 대한 보완 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T/F가 구성되었고, 관계부처 등 협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보완이 이루어졌음
 - 법무부는 미국 측과의 FTA 협상을 통하여 충분한 보완조치를 하였고,
 - 특히, 간접수용의 보상대상에서 ‘재산적 이익(property interests)’을 제외하여 ‘재산권(property rights)’으로만 한정하였고, 간접수용에 우리나라 수용법제의 핵심개념인 “특별희생(special sacrifice)” 법리를 추가하는 등 우리 헌법상의 보상원칙을 반영하였으며(한-미 FTA 부속서 11-나),
 -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 공공복지 목적 조치의 분야에 보건, 안전, 환경 외에 “부동산가격 안정화 조치”를 추가하고, 이러한 열거는 한정적이 아닌 예시적 열거임을 각주에 명기하여 간접수용의 예외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내법과 조화를 이루었으며(한-미 FTA 부속서 11-나),
 - 또한, 중재판정부 의장중재인은 합의가 없는 한 제3국인으로 임명하고, 전체 중재과정에서 한국어와 영어가 모두 공식 중재언어임을 규정하는 등 중재판정부의 공정성을 제고하였음(한-미 FTA 제11.19조 제3항, 제11.20조 제3항 등)
- 따라서, ISD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즉시 보도바랍니다

문의 : FTA통상실 최용민 실장(6000-5395, 010-6623-1264)

ISD, 중립적 분쟁해결 수단이자 글로벌 스탠다드 FTA민대위, 'ISD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 통해, 한·미 FTA 비준 촉구

FTA민간대책위원회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제도(ISD)는 중립적 분쟁해결 절차이자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착된 제도라는 취지의 경제계 의견을 발표하고 한·미 FTA 비준 동의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였다.

1일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의회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FTA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ISD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ISD가 마치 미국의 투자자와 기업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우리 사법적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는 제3의 판정기관을 통해 중립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약 당사국간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ISD의 취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이며, 오히려 힘의 논리가 아닌 공정한 해결절차를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한·미 양국에 상호적으로 적용되므로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FTA민대위는 최근의 투자흐름만 보면 ISD가 오히려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보호를 위해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217억 달러인데 반해 같은 기간 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액수는 115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내세우면서 그만큼 우리 기업의 투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수단이 바로 ISD라고 강조했다.

또한 FTA민대위는 ISD는 한·미 FTA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2,500여개에 달하는 투자관련 국제협정에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가 체결한 85개의 투자보장협정 중 80개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고 있어

더 이상의 논쟁이나 검증이 필요치 않다면서 ISD를 독소조항으로 규정하여 국회 비준동의를 미루는 것은 우리의 현실과 세계적 추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계는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한·미 FTA에 대한 조속한 비준을 통해 '무역 1조 달러' 달성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을 통해 서민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익차원에서 한·미 FTA를 조속히 비준해 달라고 촉구했다.

【참고】 FTA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한국무역협회 회장 사공 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허창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신동규

붙임. ISD에 대한 경제계 입장 1부. 끝.

ISD에 대한 경제계 입장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우리 경제계를 대표하여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일부 정치권에서 한-미 FTA의 반대명분으로 삼고 있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제도(ISD)에 대해 우리 기업인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일부에서는 ISD가 마치 미국의 투자자와 기업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우리 사법적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제3의 판정기관을 통해 중립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약 당사국간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ISD의 취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오히려 힘의 논리가 아닌 공정한 해결절차를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한·미 양국간에 상호적으로 적용되므로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최근의 투자흐름만 본면 오히려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보호를 위해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217억 달러인데 반해 같은 기간 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액수는 115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그 만큼 우리 기업의 투자보호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수단이 바로 ISD입니다.

ISD는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는 한·미 FTA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2,500여개에 달하는 투자관련 국제협정에 대부분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가 체결한 85개의 투자보장협정의 대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ISD를 독소조항으로 규정하여 국회 비준동의를 미루는 것은 우리의 현실과 세계적 추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입니다.

투자자-국가제소제도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한·미 FTA에 대한 조속한 비준을 통해 '무역 1조 달러' 달성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을 통해 서민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국익을 위해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합니다.

FTA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사공 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허창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신동규

※ FTA민간대책위원회는 2006년 우리나라의 주요 FTA협상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 대정부건의, 협상 지원, 홍보 등 FTA에 대한 민간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기구로 출범했다. FTA민간대책위원회는 경제4단체(무역협회, 전경련,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은행연합회, 업종별 단체, 연구기관 등 총 42개 단체·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교통상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보도자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986호 배포일시 : 2011.11.1(화)

문의 : FTA 정책국 공보·홍보 담당관(FTA정책국 심의관) 김영무(☎:2100-8120)

제 목 : “투자자-국가 소송제 문제점은” 한겨레신문 기사(11.1) 관련

“투자자-국가 소송제 문제점은” 제하 11.1(화) 한겨레신문 기사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 및 외교통상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중재판정부의 공정성

(기사내용)

- “현재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은 8명이지만 미국인은 137명이나 된다”

(사실관계)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협약은 모든 협약 당사국이 중재인 및 조정인 각각 4명(총 8명)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협약 제13조).
-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은 ICSID 협약 당사국으로 공히 각각 8명의 후보를 지명해 두고 있음.
- 기사에서 ICSID에서 활동하는 미국인이 137명이라고 한 것은 현재까지 제기된 ISD 사건 총 390건중 미국(투자자 제소 또는 정부 피소)이 관여된 사건이 123건에 달하는데 당사자(제소 투자자 또는 피소 정부)가 중재인 1명을 지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많은 미국인이 활동했기 때문임.

2. 미국의 ISD 사례 관련

(기사내용)

- “미국기업, 상대국 제소건수중 패소 20%뿐”
 - “현재까지 미국 기업이 상대국 정부를 제소한 사례는 모두 108건인데, 이 가운데 패소한 것은 22건뿐이다.”

(사실관계)

- 유엔무역개발위원회(UNCTAD)의 투자자-국가 분쟁 통계(국제투자조약에 근거한 분쟁, 2010년말 기준)에 따르면, 미국 투자자가 외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사례는 총 108건이며, 최종판결이 난 55건중 미국 투자자는 22건(20.4%)을 지고, 15건(13.9%)을 이겼음.
- 기사에서 패소가 20%뿐이라는 주장은 마치 미국 투자자가 ISD 사건의 80%를 이긴 것처럼 오도하고 있음(실제 승소율은 13.9%에 불과).

3. 사법주권 훼손 주장

(기사내용)

- “검찰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도 예외 대상이 아니다.”

(사실관계)

- 검찰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도 ISD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실제로 중재판정부가 국내사법판정을 심리하게 되는 경우는, 국내사법절차에 있어서 적법절차 등 외국인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부인, 정당한 변론권의 박탈 등 재판 절차를 명백히 부당하게 진행) 위반하였는지가 그 대상이 되는 때임.

- o 법해석 등에 관한 사법 판단 자체가 협정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는 지금까지 파악된 바 없음.
- o 참고로, 기사에서 예시한 사례들은 각각 ① 동업자의 사기행위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ISD 절차에 제소한 사안으로 더 이상 중재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거나(Calmark Commercial Development Inc. v. 멕시코, 2002), ② 법원의 적법한 판결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안(Mondev v. 미국, 1999), ③ 중재협정상의 권리 자체를 무효화한 법원 판결에 대해 협정 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안(ATA Construction, Industrial and Trading Company v. Jordan, 2008)들로서, 동 사례들은 사법 주권 훼손의 예가 될 수 없음.



외교통상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보도자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999호 배포일시 : 2011.11.2(수)

문의 : FTA 정책국 공보·홍보 담당관(FTA정책국 심의관) 김영무(☎:2100-8120)

제 목 : “투자자소송서 패소하면 무역보복 당할 수 있다” 등 제하 경향신문 기사(11.2) 관련

“신법 성격의 FTA, 국내법보다 우위” 등 제하 11.2(수) 경향신문 기사(김지환·장은교 기자 등)는 사실관계가 잘못되었거나 오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 및 외교통상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투자자소송서 패소하면 무역보복 당할 수 있다” 관련

(기사내용)

- "한·미 FTA 협정문은 'FTA에 편입된 투자자-국가 제소에 의해 제소국은 패소한 상대국의 불이행에 대해 관세 보복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국이 국제중재에서 패소한 뒤 재판부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FTA 특혜관세의 정지라는 관세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

- ISD 중재재판부의 국가패소 판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당사국이 그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의 모국이 이를 FTA상의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고 동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결과를 피청구국이 이행하지 않을 때 관세혜택의 정지와 같은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FTA에서 일반적으로 규정되는 사안임.

- WTO 체제에서도 분쟁해결 절차상 피소국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패널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소국은 분쟁해결기구 승인을 얻어 피소국에 대한 양허나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수 있음.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ISD 중재판정 불이행이 곧바로 상대국의 무역보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무역보복에 이르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인바, 동 기사는 이러한 중대한 사실관계를 누락하였음.

※ 중재판정 불이행 이후 무역보복까지의 절차

- ① 투자자의 모국이 동 분쟁을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
- ② 패널 구성
- ③ 동 중재판정 불이행이 FTA 협정 위반이라는 패널 판정 확보
- ④ 피청구국이 패널의 판정 불이행시, 투자자의 모국이 무역보복 추진 가능

(기사내용)

- “한국 정부는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 일본, 유럽공동체 등과 함께 ‘투자자-국가소송제는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포함돼선 안된다’는 내용의 공식문서를 제출”
- 이는 투자자 보호는 무역 규범내에 편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

(사실관계)

- 2003년 제6차 칸쿤 WTO 각료회의는 농업, 비농산물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선진국-개도국간 극한 대립으로 합의도출에 실패한 협상으로서,
 - 투자 분야는 소위 “싱가폴 이슈”의 4개 이슈중 하나로 DDA협상에 포함할지 여부 그 자체가 쟁점이었음.
- 우리는 동 협상시 ISD 등 별도의 분쟁해결절차를 신규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의 WTO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활용하자는 입장을 피력한 바, 이는 다자차원의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모습이 당시 명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한 입장이었음.

- 이러한 다자차원의 입장과 병행하여 우리는 양자차원의 투자협정(BIT)을 지속적으로 체결하였는 바, 2001~2003년간 총 12개를 체결하였으며 모두 ISD를 포함하고 있음.

(기사내용)

-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자료를 보면 투자자-국가소송제로 인한 분쟁은 2009년 말 현재 모두 357건이고, 이 가운데 202건(57%)은 최근 5년 사이 발생했다. 국제적으로 투자자-국가소송제 분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실관계)

- ISD 분쟁이 최근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세계화” 조류에 따라 해외투자가 더욱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신규 ISD 피청구국들은 대부분 국내법체계가 미비한 국가들이거나, 행정력이 낙후된 국가임을 유념필요
- 상기와 같은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제소가 없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법제도 및 행정제도가 공정/공평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신법 성격의 FTA, 국내법보다 우위” 관련

(기사내용)

- “이종훈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의 적용범위는 투자협정보다 한·미 FTA가 훨씬 더 넓어 국내 산업 보호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실관계)

- FTA가 BIT보다 반드시 투자자 보호 범위가 넓어 제소 가능성이 높다고는 볼 수 없음.

- ISD 제기는 협정상의 의무위반을 실체적 요건으로 하는데, FTA와 BIT 간에 이러한 협정상의 의무 범위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투자자의 보호 범위가 “설립전 투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ISD 제기 대상이 넓어진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

※ 한·일 BIT에서처럼 BIT에서도 ‘설립전 투자’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가 있어 BIT가 반드시 ‘설립후 투자’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님.

3. “건보 당연지정제 소송당할 수도” 관련

(기사내용)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회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보장성 강화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캐나다에서 민간 의료클리닉 분야에서 투자한 미국의 영리병원 트러스트 기업인 센츄리온은 2008년 7월 캐나다 연방보건법을 중재절차에 회부한 적이 있다.”
- "대기업이 두부나 콩나물 등을 팔 수 없도록 제한해 사업에서 철수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업 철수로 기업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관계)

- 공적 건강보험체계와 관련된 우리 정부 정책은 한·미 FTA 협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협정 제13.1조제3항가호) ISD 대상이 아니므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ISD 대상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 따라서, 한·미 FTA 발효 후에도 우리 정부가 공적 건강보험과 관련된 조치를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 기사에서 예시한 Centurion 대 캐나다 사건(2008)은 캐나다내 외과수술 시설 설립(보건의료서비스)과 관련된 캐나다 정부의 규제조치에 대한 분

쟁으로서 공적건강보험에 대한 것이 아니었음. 캐나다는 NAFTA에서 우리와는 달리 보건의료서비스를 유보하지 않았음.

- 참고로 동 사건은 청구인이 공탁금을 예치하지 않아 중재 절차가 종료되었음.
- o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법안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ISD 제기 가능성은 예단할 수 없음.
 - 적합업종 선정으로 인해 해당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 수용에 해당되어 ISD 제기근거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미 FTA상의 판단 기준(경제적 효과, 정부 조치의 성격, 합리적 기대이익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다만, 국가정책에 의해 대기업이 특정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해당기업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은 FTA 규정여부를 떠나 우리 헌법상 당연한 것임.

4. “중남미, 미국 상대 제소 사례 없어” 관련

(기사내용)

- o “야당은 중남미 국가들은 FTA를 체결한 미국을 상대로 소송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 o “야당은 재판소 인적 구성이 불평등하다고 주장한다.”
 - “이 요건은 세계은행 총재를 다수 배출한 미국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사실관계)

- o 기사 내용은 중남미 국가들의 對美 투자가 미미하다는 현황을 무시한 논리적 비약임.

* 미 통계국(Census Bureau)의 2009년 기준 통계를 보면, 대미 총투자액 2조1,145억 불 중 중남미지역의 대미 투자액은 147억불에 불과(전체의 0.7%)

- NAFTA의 경우, 멕시코 기업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1건을 제기(Canacar v. 미국(2009), 현재 계류중)한 바 있음.
- 제도적·경험적으로 제3의 중재인을 워싱턴에 소재한 ICSID 사무총장이 임명한다고 해서 중재판정부가 중립적이지 못하며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무엇보다도 ISD상 개별 미국 기업의 이해와 미국 정부의 이해가 반드시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없음.
 - 실례로, NAFTA의 ISD 사례 중 ICSID에서 중재판정부의 최종 결정이 있었던 사례 총 13건을 분석한 결과, 중재인 임명과 판정의 편파성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사례 9건중 미측에 유리한 판정 6건, 불리한 판정 3건이 있었던 반면, ICSID 사무총장이 임명한 사례 4건중 미측에 유리한 판정 2건, 불리한 판정 2건이 있었음.

5. "중남미 서민 울린 '투자자 소송'" 관련

(기사내용)

- “대한민국 헌법은 123조에서 농어민과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냉혹한 국제질서가 적용돼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볼리비아와 페루의 사례는 생생이 경고하고 있다.”

(사실관계)

- 기사에서 언급한 백텔 대 볼리비아 사건은 분쟁당사자 간 합의로 중재가 종료되어, 투자자 주장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합의에 대한 배상금 지불은 없었음.
- 동 사건의 근거가 된 네덜란드-볼리비아 BIT는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등을 규정하였으나, 한·미 FTA와 같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유보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참고로, 한·미 FTA에는 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을 포함하는 환경 서비스에 대한 포괄 유보 등 공공정책 자율권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

※ 규제를 도입·강화할 수 있는 “미래유보(부속서II)”에 보건의료·사회서비스, 전기·가스·환경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 초·중등 교육 및 성인교육 등 44개 분야를 기재하여 공공정책 자율권을 확보

(기사내용)

- “1997년 과테말라의 철도운영권을 따낸 다국적회사 RDC는 과테말라 정부가 철로 부근에 사는 불법거주자를 퇴거시키지 않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과테말라 정부를 상대로 국제소송을 제기했다.”

(사실관계)

- 동 사건은 현재 진행중으로, 현 시점에서 동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움.
 - 참고로, 동 사건에서 투자자(RDC)와 과테말라 정부는 1997년 50년간 철로시스템 재건·운영 및 사용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과테말라 정부가 2006년 8월 철로 사용권이 국익에 반한다는 결의서(Lesivo Resolution)를 채택하였음.
 - 결의서 채택 이후 RDC에 대한 외부 투자가 끊겼으며, 2007년 9월 철도 운행이 중단되고, 강도들이 철도를 해체함에 따라 상당부분의 교량과 철로가 사라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기사내용)

- “페루 납 생산업체인 도 런 페루사의 최대주주인 렌코는 페루 국민들이 납 중독 문제로 도 런 페루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자, ‘페루 정부가 불공정하게 다뤘다’며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관계)

- 동 사건의 경우, 2010년 12월에 중재의향서가 제출되어 중재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으로, 현 시점에서 동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움.

- 참고로, 도 런 페루社(DRP)는 페루 정부와 페루 라오로야시의 오염 정화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페루 정부는 DRP에 제3자 소송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서면 약속하였음.
- DRP는 페루정부가 2007년에 페루 라오로야시의 주민들이 DRP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거부하는 등 투자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끝/



외교통상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보도자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996호 배포일시 : 2011.11.2(수)

문의 : FTA 정책국 공보·홍보 담당관(FTA정책국 심의관) 김영무(☎:2100-8120)

제 목 : “국가의 정당한 정책도 ISD 앞에 맥없이 무릎” 한겨레신문 기사(11.2) 관련

"국가의 정당한 정책도 ISD 앞에 맥없이 무릎"제하 11.2(수) 한겨레신문 기사에서 언급된 각종 사례(case)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동 기사에서 언급된 ISD 사건들은 한겨레신문 기사의 주장처럼 국가의 정당한 정책도 ISD 앞에서는 무력화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례가 아니며, 오히려 국가의 정당한 공공정책에 대하여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실증적 사례들입니다.

1. 카길社 대 멕시코

(기사내용)

- “... 멕시코 조세정책에 대해 ... 미국기업 3곳이 멕시코 정부를 중재절차에 회부했고 중재심판부는 1억 918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사실관계)

- 중재판정부는 멕시코 정부의 조세조치와 관련된 2건의 중재판정(Archer Daniels Midland Company and Tate & Lyle Ingredients Americas, Inc. vs. Mexico(2007년), Cargill, Inc. vs. Mexico(2009년))에서 동 조치가 NAFTA 제 1102조(내국민대우) 및 제1106조(이행요건)를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인 미국기업에 총 1억 1080만달러(이자 및 소송비용 제외)를 배상하라고 판결함.

※ 고과당옥수수시럽(HFCS : High fructose corn syrup) 등 설탕 이외의 감미료를 사용하는 음료 등에 대해 20% 소비세 부과(2001.12월 도입)

- 멕시코 정부의 조세조치는 정당한 정책목적을 지닌 공공정책으로서 취해진 조치가 아니라, 1998년부터 시작된 미국과 멕시코간의 설탕 무역 분쟁의 일환으로서 멕시코 정부가 미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였음.
- 따라서, 동 중재판정은 멕시코 정부가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차별조치를 도입한데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례로서, 국가의 정당한 공공정책이 ISD제도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의 근거 사례가 될 수 없음.

2. 아주리社 대 아르헨티나

(기사내용)

- “아주리는 1999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의 수도를 30년간 운영할 권리를 따냈다. 그때부터 수돗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고, 이듬해에는 독성 박테리아까지 쏟아졌다. 지방정부가 2001년 운영권 협약을 종결하자 아주리는 중재절차를 신청해 배상금을 받아냈다.”

(사실관계)

- 아주리社의 수돗물 공급 차질, 독성 박테리아 발생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2000년 4월 아주리社에서 공급하는 물에서 조류(algae)가 발견됨.
 - 그러나 이런 현상은 수돗물 정화시설 중 일부를 수리할 의무가 있는 지방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동 사건에서 아르헨티나 지방정부는 정화시설을 정비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계약 조건에 따른 수도요금 인상을 불허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류 발생 이후에는 주민들에게 수도 요금을 지불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등의 행위로 아주리社에 피해를 준 것이 확인되었는바,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정책행위로 볼 수 없음.

3. 메탈클래드 대 멕시코

(기사내용)

- “중재심판의 특징은 (중략) 국가정책의 정당성이나 동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의 어떤 조치로 인해 투자자의 자산 가치가 감소했고, 이것이 협정 위반이라면서 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다”

(사실관계)

- 동 사건은 멕시코 연방정부 및 주정부로부터 폐기물 매립시설의 건축·운영 허가를 모두 받은 미국의 메탈클래드社가, 법적 권한이 없는 市 정부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된 경우임(1997).
- 동 사례는 정부의 정당한 환경정책이 도전 받을 수 있는 사례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은 법적으로 보장되었던 투자자의 소유권이 부인되어 투자가치가 전면적으로 영구히 박탈되는 경우에는 간접수용이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참고로, “국가정책의 정당성이나 동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판시 부분은, 동 사건 발생 이후 멕시코 정부가 제정한 새로운 법이 투자자의 기존 재산, 신뢰, 예측 가능성 등을 완전히 침해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법이 국가정책상 필요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멕시코 정부의 조치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이며, 일반적인 법리라고 보기 어려움.

4. 에틸 대 캐나다

(기사내용)

- 캐나다 정부에 의한 가솔린 첨가제(MMT)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ISD 절차를 진행한 결과 1,300만불에 합의

(사실관계)

- 동 사건은 1997년 캐나다 정부가 환경 및 공중보건 보호 등을 이유로 휘발유 첨가제인 MMT에 대한 수입·수출과 州間거래금지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미국 회사인 Ethyl社가 영업상 손실을 입게되어 발생한 사례임.

- 캐나다측 조치의 '환경친화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MMT가 州내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진정한 '환경친화적' 목적을 가진 조치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져, 캐나다측은 중재판정부의 판정이 있기 전에 제소 투자자와의 합의로 분쟁을 조기 종결함.
- o 캐나다측 조치는, 환경보호목적의 조치라는 캐나다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위장된 차별조치를 통해 자국 MMT 생산업체들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국가의 정당한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음.

/ 끝 /

1. 투자보장협정(BIT) 발효 현황(85개국)

- * ISD제도는 전세계 2,500여개 투자협정(BIT)에 대부분 포함되어있으며, 우리가 체결하여 이미 국회 동의를 거쳐 발효 중인 모든 FTA(7개 중 한·EU FTA를 제외한 6개)와 85개 투자보장협정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내용
- 우리나라가 체결, 발효중인 **85개** 투자보장협정 중 ISD조항이 없는 협정은 4개에 불과

(2011.8 현재)

	발 효(85)	ISD 불포함 국가(4개국)	비 고
구주 지역 (32 개국)	독일('67), 영국('76), 프랑스('79), 덴마크('88), 헝가리('89), 폴란드('90), 러시아('91), 오스트리아('91), 이탈리아('92), 우즈베키스탄('92), 리투아니아('93), 터키('94), 스페인('94), 체코('95), 그리스('95), 타지키스탄('95), 핀란드('96), 포르투갈('96), 카자흐스탄('96), 라트비아('97), 우크라이나('97), 스웨덴('97), 벨라루스('97), 네덜란드('05), 슬로바키아('06), 알바니아('06), 크로아티아('06), 불가리아('06), 아제르바이잔('08), 루마니아('08), 키르기즈('08), 벨·룩셈부르크('11)	독일 프랑스	▶ 개정된 협정 - 네덜란드('75), 벨·룩셈부르크('76), 루마니아('94) ▶ 한·EFTA FTA('06) -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노르웨이는 투자보장 제외)
아시아 지역 (16 개국)	스리랑카('80), 방글라데시('88), 말레이시아('89), 태국('89), 파키스탄('90), 몽골('91), 인도네시아('94), 인도('96), 라오스('96), 필리핀('96), 캄보디아('97), 홍콩('97), 일본('03), 브루나이('03), 베트남('04), 중국('07)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 개정된 협정 - 베트남('93), 중국('92) ▶ 한-싱가폴 FTA('06)
아프리카-중동 지역 (22 개국)	이집트('97), 카타르('99), 사우디아라비아('03), 이스라엘('03), 오만('04), 아랍에미리트('04), 요르단('04), 이란('06), 레바논('06), 쿠웨이트('07), 튀니지('75), 세네갈('85), 남아공('97), 나이지리아('99), 모로코('01), 알제리('01), 모리타니아('06), 리비아('07) 모리셔스('08), 가봉('09), 부르키나파소('10), 콩고공화국('11)		▶ 개정된 협정 - 이란('98)
미주 지역 (15 개국)	파라과이('93), 페루('94), 아르헨티나('96), 볼리비아('97), 니카라과('01), 온두라스('01), 파나마('02), 엘살바도르('02), 멕시코('02), 과테말라('02), 코스타리카('02), 트리니다드토바고('03), 가이아나('06), 자메이카('07), 도미니카('08)	※ 한-미간 투자보장에 관한 각서교환('60), 양국간 투자촉진 협정('98) 상에는 ISD 조항이 없음.	▶ 한·칠레 FTA('04) ▶ 한·미 FTA('07.6월 서명)

2. 한국과 EU 국가간 체결한 BIT

연번	국가	발효일	ISD 조항 포함 여부
1	네덜란드	1975.6.1 (2005.3.1 개정본 발효)	포함
2	영국	1976.3.4	
3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1976.9.3 (2011.3.27 개정본 발효)	
4	덴마크	1988.6.2	
5	헝가리	1989.1.1	
6	폴란드	1990.2.2	
7	오스트리아	1991.11.1	
8	이탈리아	1992.6.26	
9	리투아니아	1993.11.9	
10	스페인	1994.7.19	
11	루마니아	1994.12.30 (2008.1.11. 개정본 발효)	
12	체코	1995.3.16	
13	그리스	1995.11.4	
14	핀란드	1996.5.11	
15	포르투갈	1996.8.12	
16	라트비아	1997.1.26	
17	스웨덴	1997.6.18	
18	슬로바키아	2006.2.7	
19	불가리아	2006.11.16	
20	독일	1967.1.15	불포함
21	프랑스	1979.2.1	

※ 27개 EU회원국 중 22개국과 BIT체결, 20개국과 ISD적용

참고 4

기체결 FTA의 ISD 포함 현황

구분	상대국	ISD 조항 포함 여부	관련 조항
발효 (7건)	칠레 (‘04.4월 발효)	O	제10장 제3절
	싱가포르 (‘06.3월 발효)	O	제10장 제3절
	EFTA (‘06.9월 발효)	O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리히텐슈타인공국· 스위스연방 간의 투자에 관한 협정 제16조
	ASEAN (상품 ‘07.6월, 서비스 ‘09.5월, 투자 ‘09.9월 발효)	O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 하의 투자에 관한 협정 제18조
	인도 (‘10.1월 발효)	O	제10장 제3절
	EU (‘11.7.1 잠정발효)	X	- *개별회원국과의 BIT에 ISD 포함
	페루 (‘11.8.1 발효)	O	제9장 제2절
타결 (1건)	미국 (07.6월 협정 서명)	O	제11장 제2절

참고 5

한·미간 투자통계

1. 한국의 대세계 투자 현황(2011.6월 누계)

(단위: 억불,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6	누 계
한국 → 해외	65.1	67.1	65.6	92.5	97.7	195.8	304.3	370.6	305.8	335.5	269.0	2,675.8
해외 → 한국	112.9	91.0	64.7	128.0	115.7	112.5	105.2	117.1	114.8	130.7	53.7	1,789.5

* 출처: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신고금액기준), 누계 : 1968 ~ 2011.6월말까지

※ 우리의 해외투자 현황(2010 누계): 총 2,444억불, ①중국 (458억불), ②미국 (412억불), ③홍콩 (132억불), ④베트남 (130억불), ⑤영국 (91억불), ⑥인도네시아 (85억불) 순

2. 한·미 투자 현황(2011.6월 누계)

- 양국간 투자규모는 상호 대등한 수준 (미→한 448.9억불, 한→미 533.8억불)
 - 2006년 對미 투자액이 對한국 투자액을 넘어선 이후, 동 추세가 지속 (2006~2011.6월 : 미→한 99.4억불, 한→미 345.9억불)

(단위 : 억불, 신고기준)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6	총누계*
미 → 한 (비중)	38.8 (34.4)	44.9 (46.4)	12.4 (19.2)	47.2 (36.9)	26.9 (23.3)	17.1 (15.2)	23.3 (22.1)	13.3 (11.3)	14.9 (12.9)	19.7 (15.1)	11.1 (20.7)	448.9 (25.1)
한 → 미 (비중)	19.2 (29.4)	14.7 (22.0)	0.8 (12.1)	14.8 (16.0)	14.4 (14.7)	22.1 (11.3)	44.4 (14.6)	62.7 (16.9)	39.8 (13.0)	51.1 (15.2)	125.8 (46.8)	533.8 (19.9)

* 출처: 지식경제부, 수출입은행, 비중은 전세계 규모 대비

3. 한국의 업종별 대미투자(2010 누계)

(단위: 억불, %)

업종	농림업 어업·광업	제조	건설	도소매	운수	통신	금융보험	숙박 음식점	여가관련 서비스	부동산 임대
금액	39.6	113.3	7.1	107.3	6.4	20.0	39.1	10.2	4.31	26.2
비중	9.6	27.5	1.7	26.0	1.6	4.9	9.5	2.5	1.0	6.4

* 출처: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비중 : 대미투자 누계금액(412억불) 대비

4. 미국의 업종별 대한투자(2010 누계)

(단위: 억불, %)

업종	농·축·수산·광업	제조업	서비스	전가가스·수도·건설	합계
금액	0.7	132.9	268.8	35.5	437.8
비중	0.2	30.3	61.4	8.1	100.0

* 출처: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통계